

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(주민등록증의 발급 등) 제1항 및 제3항, 동법 시행령 제35조(주민등록증의 발급), 제36조(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)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1. 공고대상 및 발급기간

세대주 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발급기간	비고
장○○	김○○ 2007.7.2.	김해시 한림면 용덕로237번길 78	2024.7.1. ~ 2025.6.30.	

2. 발급안내

-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는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적어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-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가 필요합니다.
 - 가) 학생증 또는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(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함)
 - 나) 주민등록증 관할 통장·이장의 확인
 - 다) 17세 이상의 같은 세대의 세대원, 배우자,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지참해 동행
- 준비해야 할 사진 :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매(3.5cm×4.5cm)
-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신청인 또는 신분이 확인된 17세 이상 동일 세대 세대원 등이 직접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령해야 합니다. 다만 신청인이 원하면 등기우편료를 부담하고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.

※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 제 40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

(담당자 : 이정옥 문의전화 : 055-359-1083)

2024년 7월 31일

한림면장

